대전학하 A-6BL 학하 리슈빌 포레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학하 RicheVille 포레 리슈빌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90번길 76(학하 A-6BL)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34호
■ 시 행 사 : 하나금융투자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공 사 사 :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 신중 그리고 차분하게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요건 사전 검토 필수
• 학하 리슈빌 포레는 신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학하리슈빌포레.com) 로 운영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학하리슈빌포레.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안 주택의 분양보증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첨자의 서류 검수 및 정당계약시 사전예약한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정책자의 자격검증 서류제출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시 않을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장치에 협조할 것
- 체온 측정시 37.5도가 넘을 경우 당사자 입장 불가

■ 학하 리슈빌 포레 시 상담전화(☎042-822-9577),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 전화(☎1644-7445)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특주하는 상담전화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청약 인터넷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는 청약자 관련한 상담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는 사이버 상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 자격 요건사항 관련 사항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입주자 모집 일이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홈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말미 청약 인터넷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께서 마지막 확인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비투기지역)(청약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한로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일당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로 인한 청약 정정 혜택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계좌이체한 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청년 세어 및 청년 세대 구분	비율
특별공급	청년 세어 및 청년 세대 구분	375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각 항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만19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40%이하 3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접수처 : 당사홈페이지 (학하리슈빌포레.com)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특별공급(청년세어,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부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년 신청이 미달 될 경 청년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자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계약자, 잔금	하나은행	201-910028-13704

예금주
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격어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될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목도 전송받은 종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근복무확인서 양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근 복무자(직업인 계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중고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명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약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인것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자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자, 잔금	하나은행	201-910028-13704	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송,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분양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은 반드시 74A 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단위 : 원)

■ 특별공급(청년 세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신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주택공급신청 세대주 및 성년인 자인(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12월 등을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청년 세어, 청년 세대구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청년세어, 청년세대구분) 당첨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에서 추첨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청년세어 또는 청년세대구분) 당첨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료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청년세어, 청년세대구분)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 (학하리슈빌포레.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특별공급(청년세어, 청년세대구분)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날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해당 주택)이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선발인원	자격요건 및 접수처	선정방법
일반 공급	379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인 세대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여 부적격자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는 입주자모집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11.29.(월)]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자격이 상실되어 임대차계약을 계약해지 당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요청 시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검색) 접속 ⇒ 청약 홈페이지에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 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학하리슈빌포레.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해당 주택)이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신청부터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청부터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한로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일당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로 인한 청약 정정 혜택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계좌이체한 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 제2조 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경쟁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경우 신혼은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공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의 제2호의 임차인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분되어 입주 기준으로 함) (ex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지적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동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상속 주택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또는 군복 근무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청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1호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일 주택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경우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의 제2호의 임차인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분되어 입주 기준으로 함) (ex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지적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동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상속 주택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또는 군복 근무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청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1호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일 주택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경우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검색)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 전산 표기상 공급지역은 대전으로 표기되지만, 전국 지역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해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를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구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신청부터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청부터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한로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일당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로 인한 청약 정정 혜택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계좌이체한 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말미 청약 인터넷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께서 마지막 확인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비투기지역)(청약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